성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2년 2월 일
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사유

○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67-1번지 일원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경상북도 고시 제2011-177호, ’11.5.2)에 따른 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, 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 등) 결정(변경) “안” 대하여 주민의견청취,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계획“안”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.

2. 결정 내용

[군 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, 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“안”]

1) 용도지역
 ○ 자연녹지·일반공업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 (A = 100,640㎡)
 ○ 일반공업·자연녹지지역 → 준공업지역 (A = 24,960㎡)
 ○ 일반공업지역 → 자연녹지지역 (A = 710㎡)
2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: A = 117,590 → 113,770㎡(감 3,820㎡)
3)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 ○ 용도지역
 - 제1종일반주거지역 A = 94,260㎡, 준공업지역 A = 19,510㎡
 ○ 군계획시설 변경
 - 도로 9개 노선, 공원 2개소, 녹지 1개소, 공공청사(경찰서) 1개소
 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용지계획
 - 단독주택 A=47,150㎡, 근린생활시설 A=16,740㎡, 공공청사 A=12,040㎡,
 - 종교시설 A=5,390㎡, 종합사회복지시설 A=10,170㎡, 새마을회관 A=770㎡
 -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

3. 결정 사유

○ 성주읍 성산리 67-1(종합사회복지관 예정지)일원에 군관리계획(재정비)을 경상북도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, 현재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 중인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, 국민체육센터, 새마을회관 건립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·지구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주민의견 청취

○ 공람·공고 기간 : '11. 11. 29. ~ 12. 16.(14일간 : 국·공휴일 제외)

○ 주민설명회 개최 : '12. 1. 13.(성주읍사무소 2층)

○ 공람방법 : 일간신문, 군 공보, 성주군 홈페이지, 읍게시판

○ 공람장소 : 성주군청 도시행정과

나.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

○ 지금까지 추진현황

-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: '11. 5. 2.
-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(의견수렴), 및 관련실과 협의 : '11. 11. ~ 12.

○ 향후 추진계획

-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신청(경북도) : '12. 3.
- 경북도 관련실과 및 기관협의 및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 : '12. 3.~ 4.
-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: '12. 5.
-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등 고시 : '12. 6.